

“초상권 동의 범위”와 “기각결정에 대한 법적 쟁점”

언론중재위원회는 8월 23일 예비법조인 ADR 연속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상권 분쟁에 있어 동의의 범위”와 “언론조정신청 사건의 기각결정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모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 세션별로 실제 조정신청된 사건을 바탕으로 위원회 실무수습교육 중인 로스쿨생들이 패널로 참가해 피해자와 언론사의 입장에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밝히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초상권 분쟁에 있어서 초상권 동의의 범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는 캠핑장에서 34개월된 유아가 부모를 잃고 길을 헤매고 있는 장면을 모 방송사에서 보도했고, 이에 대해 유아의 부모는 유아의 초상권이 침해됐으며 조정 신청을 한 사안이었다. 또 다른 사례는 한 여성 신청인이 외국배우 윌 스미스와 휴대폰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해 초상권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한 사건이었다.

신청인측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은 방송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초상권 사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또한 공개 장소일지라도 초상권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측 입장을 대변한 토론자들은 방송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어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세션에서는 언론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중재부가 기각 결정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부산에 소재한 모 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부산 어린이집’이라고 표현한 경우 ‘부산어린이집’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조정대상물이 ‘광고’인 경우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부는 반드시 기각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신청인측 토론자들은 기각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조정을 하는 것이 피해 확산 가능성을 막고 분쟁 해결에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모두에게 경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반대측 토론자들은 사유가 분명하다면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이 조정 남발 가능성을 막고 언론 취재활동을 위축하지 않으며 나아가 언론보도를 존중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위원회 본연의 존재 의의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제8중재부 장현우 중재부장(변호사)은 “다루어야 할 쟁점이 많은 사안을 핵심 쟁점별로 잘 요약했다”면서 “다만 언론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판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접근 자세를 가지고 조정에 임해야 하고 법조인은 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평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토론회 총평에서 “실제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이 이뤄져 예비법조인들에게 현장 중심의 법이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적 소양을 넓히고 ADR제도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끌어 갈 법률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 위원장, 강평을 한 박정호 · 권오승 · 장현우 · 박현채 중재위원, 로스쿨생을 비롯하여 사무처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제1세션 “초상권 분쟁에 있어서 동의의 범위” 주제로 토론 중인 로스쿨생



제2세션 “언론조정신청 사건의 기각 결정에 대한 법적 쟁점” 주제로 토론 중인 로스쿨생